한다.

- (마) 앵커체의 인장강선은 추후 재인장에 대비하여 여유를 두고 절단하여야 한다.
- (바) 주입재를 주입할 때 팩커 바깥쪽으로 주입재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며 적 정한 주입압력을 유지하여야 한다.

7.3.4 지하매설물에 인접한 굴착

- (1) 시가지 굴착 등을 할 경우에는 도면 및 관리자의 조언에 의하여 매설물의 위치를 파악한 후 줄파기작업 등을 시작하여야 한다.
- (2) 굴착에 의하여 매설물이 노출되면 반드시 관계기관,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확인시키고 상호 협조하여 지주나 지보공 등을 이용하여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 위치에서 50cm 이내는 인력으로 굴착하여야 한다.
- (3) 매설물의 이설 및 위치변경, 교체 등은 관계기관(자)과 협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.
- (4) 최소 1일 1회 이상은 순회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는 와이어로프의 인장상태, 거치구조의 안전상태, 특히 접합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.
- (5) 매설물에 인접하여 작업할 경우는 주변지반의 지하수위가 저하되어 압밀침하될 가능성이 많고 매설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곡관부의 보강, 매설물 벽체 누수 등 매설물의 관계기관(자)과 충분히 합의하여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(6) 가스관과 송유관 등이 매설된 경우는 화기사용을 금하여야 하며 부득이 용접 기 등을 사용해야 될 경우는 폭발방지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.
- (7) 노출된 매설물을 되메우기 할 경우는 매설물의 방호를 실시하고 양질의 토사를 이용하여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.

7.3.5 기존구조물에 인접한 굴착

(1) 기존구조물의 기초상태와 지질조건 및 구조형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작업방식, 공법 등 충분한 대책과 작업상의 안전계획을 확인한 후 작업하여야한다.